

SW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주요 내용과 관련 제도



CONTENTS

01 **하도급의 개념과 하도급법의 적용**

하도급이 무엇인가요? SW사업자 간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02 **하도급법의 주요 규율내용**

원·수급사업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03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04 **하도급법 관련 주요 제도**

그 밖에 하도급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 마련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01

하도급의 개념과 하도급법의 적용

(1)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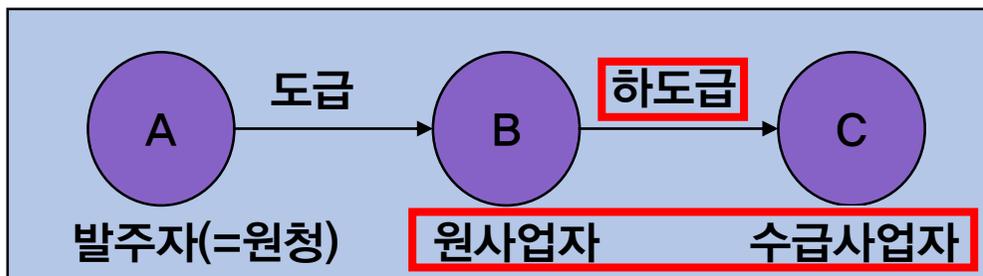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관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비교 개념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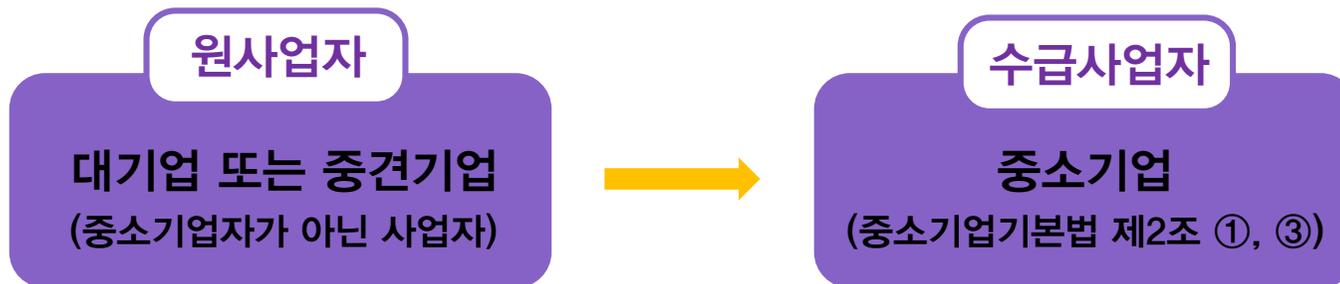
매매 :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

하도급거래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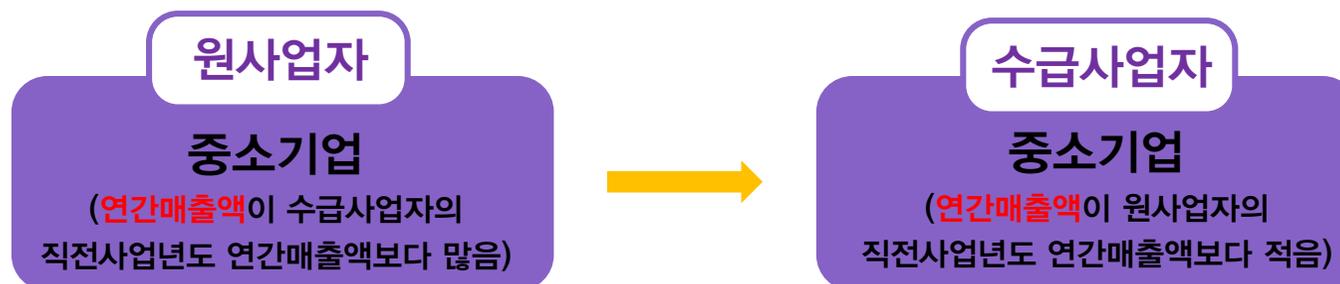
(2) 적용대상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1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



※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원사업자에 포함됨 (하도급법 제2조 제4항, 제5항 제1호)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



※ 용역업종의 경우 **연간매출액 1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음 (하도급법 제2조 제5항 제2호)

(3) 용역위탁: 용역의 의미

용역위탁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으로 나뉜다

이중,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위탁 대상물인 용역이란?

①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개발, 설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가 해당

② 역무의 공급

- 소프트웨어 컨설팅, 요구분석, SI 시험 및 설치, 시스템·정보프로그램 일정 기간 운영 및 유지보수, 전산자료처리, 데이터 저장, 검색, 제공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해당

 문제되는 거래가 하도급거래가 아닐 경우, 하도급법이 아닌 다른 법(소프트웨어진흥법, 상생협력법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3) 용역위탁: 같은 업종의 사업자 간 거래

용역위탁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으로 나뉨

이중,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 성립조건

용역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

⇒ SW사업자가, SW업 용역수행행위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성립

※ (예시) SI대기업이, 중소SI사업자에게 SI용역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해당 가능

※ (예시) 금융기업이 중소SI사업자에게 금융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해당하지 않음

 문제되는 거래가 하도급거래가 아닐 경우, 하도급법이 아닌 다른 법(소프트웨어진흥법, 상생협력법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02

하도금법의 주요 규율내용

(1) 하도급법의 주요 규율내용 개관

<p>원사업자 의무조항 (9개)</p>	<p>1. 서면발급 및 보존 (3조) 2. 선급금 지급 (6조) 3. 내국신용장 개설(7조)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9조) 5. 하도급대금 지급 (13조)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3의2) 7. 관세 등 환급액 지급(15조) 8.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16조) 9.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16조의2)</p>
<p>원사업자 금지조항 (13개)</p>	<p>1. 부당한 특약의 금지 (3조의4)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조)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5조) 4.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8조) 5. 부당 반품 (10조) 6.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1조) 7. 물품구매대금 등 부당결제청구(12조) 8.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12의2) 9. 기술자료 유용 금지(12의3조) 10. 부당한 대물변제 (17조) 11. 부당한 경영간섭(18조) 12. 거래정지 등 보복조치(19조) 13. 탈법행위 (20조)</p>
<p>발주자 의무</p>	<p>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14조)</p>
<p>수급사업자 의무</p>	<p>1. 서류 보존 (3조) 2.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건설) (13의2) 3.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21조)</p>

(2) 서면발급 의무(하도급법 제3조)

-  원사업자가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도 가능)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
-  추가·변경위탁의 경우: 용역위탁 후 계약내역에 없는 과업을 추가하여 위탁하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서면 교부는 의무사항

※ 법정 서면 기재사항

- ① 목적물,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 및 절차

※ 주요 법 위반 사례

-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 과업 추가 후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경우
- 실제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3) 하도급대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13조)

-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 ▶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5일 이내**에 지급
-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교부 금지
- ▶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연 15.5%)
- ▶ 어음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연 7.5%) 또는 **어음대체수수료**를 지급

(4)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하도급법 제3조의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설정 금지

1.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와 ‘부당특약 고시’ 에서 더 많은 유형을 규정

(4)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예시)

불명확한 과업범위에 대한 위험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제00조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계약 이행상 불가피하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급계약 변경 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제00조 “갑” 또는 “을” 이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갑” 과 “을” 은 별도의 서면합의로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제00조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수기간 종료 후 별도로 물품의 보수정비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예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원사업자에게만 귀속시키는 특약

제00조 계약목적물, 계약목적물 발명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중간 발명 등 일체의 산출물 및 발명 과정에서의 유형적 발생품, 샘플, 보고서, 실험 데이터 등 일체의 학술적, 기술적 성과의 소유권, 특허발명, 실용신안, 외장 등의 지적재산권,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는 협력사의 발명 즉시 0000에 귀속된다.

(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법 제4조)

 계약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통상의 지급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 금지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5. 원사업자가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법 제8조)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의 수령 거부·지연 금지**

※ 단,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위탁취소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위탁 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기술자료란?

1. 비밀로 관리된
2.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

「하도급법」 제2조 제15호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 요구서)**을 사전에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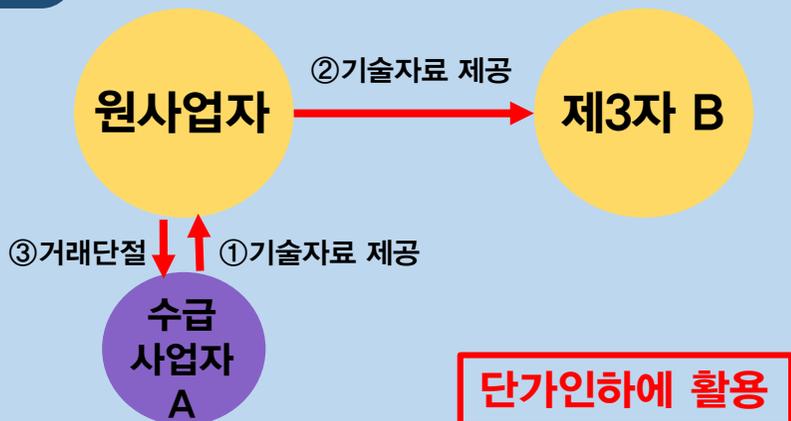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기술자료의 범위, 비밀유지의무 등 규정)**을 체결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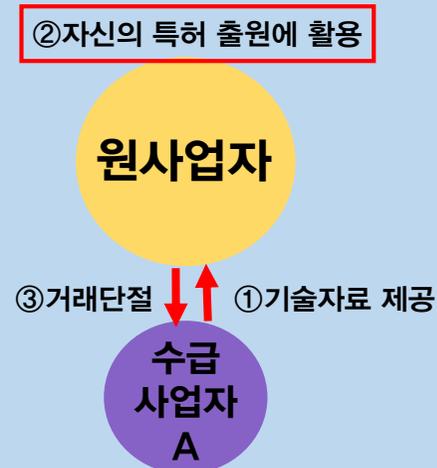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7)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유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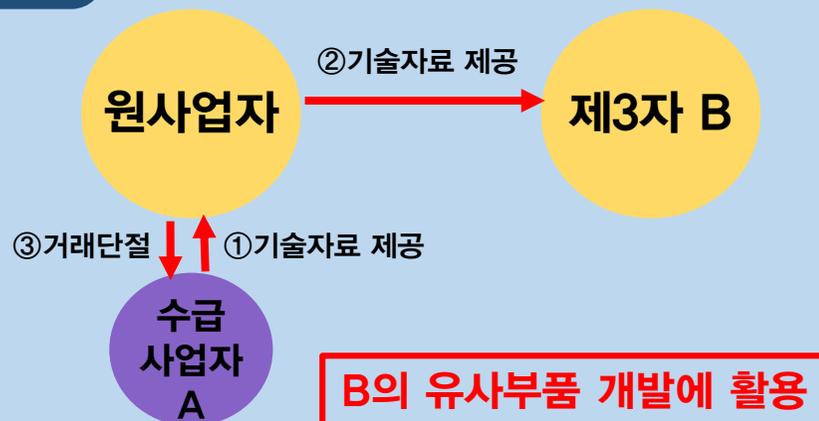
유형 2



유형 3



유형 4



(7)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신고방법)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민원참여” →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 “하도급, 기술유용, 납품단가, 유통, 가맹, 대리점 익명제보센터”
→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
- 기술유용 상담 창구(044-200-4652)

※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IP등 부수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 신고와 달리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이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제보 서식

- ▷ 피제보 회사명, 불공정행위 날짜 · 내용,
관련 기술자료의 종류, 납품 부품명, 하도급계약 유무 등 기재

03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1)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시정권고, 특약의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작위, 부작위, 보조적) 등
- 수명사실 공표명령
-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 상습법위반자 : 명단공표 (과거 3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벌점 4점 초과)
* 입찰참가 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 과태료 부과: 2억 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 사업자(단체)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거부 : 사업자(단체) 2억 원 이하, 개인 5천만 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 사업자 500만 원 이하

사법적 제재 (공정위 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 경영간섭, 탈법행위 위반자, 보복조치(3억 원 이하)

(2) 하도급 벌점제도

부과 기준	경고 (서면조사자진사정)	경고 (신고, 작권)	시정권고나 법위반자진사정 향후 재발방지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점	2점	2.5점	3.0점
감경 기준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직전 1년)			2점(90%~), 1점(70%~90%)		
	2. 현금(성)결제비율(직전 1년)			1점(현금 100%), 0.5점(현금 80%~)		
	3. 입찰정보공개비율(직전 1년)			1점(80%~), 0.5점(50%~80%)		
	4. 공정경제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직전 1년)			2점(최우수), 1점(우수)		
	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3점		
	6. 협약평가결과(직전 1년) [동반성장협약기준]			3점(최우수), 2점(우수), 1점(양호)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또는 발주자 직접지급			1점(50%~), 0.5점(~50%)		
	8. 자발적 피해구제			25%~50% 감경 (100%구제), ~25% 감경 (50%~100%구제)		

* 벌점 경감 시 각 항목마다 1회만 경감함

* 벌점 누산점수 산정: 직전 3년간 [벌점 부과점수 - 벌점 경감점수]

→ 직전 3년: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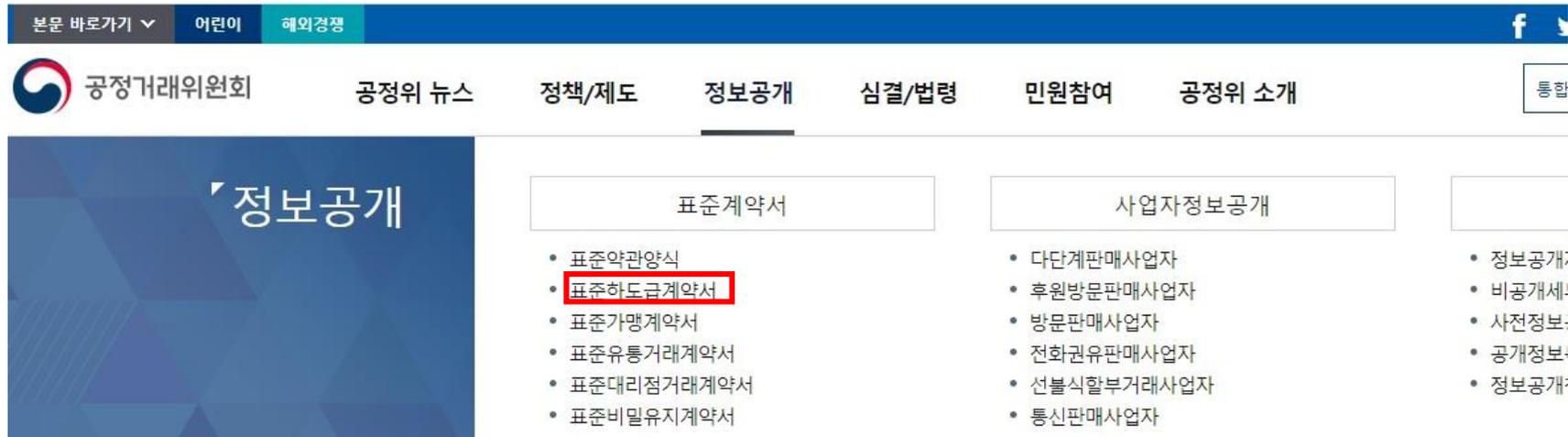
04

하도급법 관련 주요 제도

(1)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법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 중



본문 바로가기 ▾ 어린이 해외경쟁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정책/제도 **정보공개** 심결/법령 민원참여 공정위 소개 통합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사업자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약관양식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 비공개제: 사전정보: 공개정보: 정보공개:


소프트웨어분야에는 5개의 세부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

-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구축 업종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정보시스템 개발 · 구축업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 공정거래협약

- 
공정거래협약 제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1년 단위로 사전 약정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 
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전제로, 평가대상 기업은 ①동반 성장지수 공표 대상 기업 ②평가를 요청한 기업
- 
협약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등급	평가점수	주요 인센티브
최우수	95점 이상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
우수	90점 이상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하도급 벌점 2점 경감, 법인 표창
양호	85점 이상	하도급 벌점 1점 경감, 법인 표창

※ 최우수, 우수 업체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하여,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금융위 대출금리 우대, 중기부 수·위탁거래 조사 면제 등)

감사합니다

